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4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408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4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4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8. 29.자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계약은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97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7895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8. 29.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이하 ‘전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전소의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1. 26. 이후인 2021. 2. 5. 전소와는 다른 피보전채권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전소는 지금도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전소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가 법원에 계속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전소와 후소는 피보전채권이 전혀 다른 별개의 채권이고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동일한 이상 이는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소를 구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소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모두 원상회복청구권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고),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배상의 범위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태가 전소보다 선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중복제소금지에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경선, 판사 김리사

별

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6층 호 101.670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대 47617.7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47617.7 분의 51.9577

